

04.6.2018

대학원 노조화와 연관된 재미 유학생의 법적 상태에 관한 메모

To
Joseph Canamucio

From
Craig R. Shagin
Shagin Law Group LLC

CC
Coalition of Graduate
Employees

Re
Effect of Unionization on
International Students

의문:

현재 펜스테이트 대학원 노조 성립이 재미 유학생들의 유학생 비자를 비롯한 법적 지위에 대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답과 결론:

현존하는 노동법은 전반적으로 고용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노조 파업 분쇄와 노조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용하는 걸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된 내용과 이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바 본 로펌 (Shagin Law Group LLC)의 판단에 의하면 대학원 노조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해외 유학생들의 처지에 끼치는 악영향을 없으며, 외국인 신분의 유학생들 또한 법적 신분과 전혀 하자 없이 노조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령 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제 유학생의 법적 지위는 파업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설명된 바처럼 현재 수강중인 학점의 양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노조원과 마찬가지로 유학생은 파업이나 작업장 폐쇄가 진행 중일 때 근무 하는 것은 허가되어 있지 않으며, 일체의 고용, 노동 행동은 해당 노사 분규가 해결된 이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세밀 분석:

비이민 비자의 다른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더불어 F1 비자를 유지하려면 비자 소유자는 다음 중에 해당하는 [8 CFR §214.2(f)(6)] 학과 과정 및 신분상 자격을 채워야 합니다:

1. DSO에게 인가 받은 석박사 과정 재학 중.
2. 학기 당 수업 시간 12 시간을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을 내는 상태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학부 수업 수강 중.
3. 최소 3개 학교에게 입학 허가를 받았으며 학기 당 12 시간 이상 수업하는 주니어 칼리지, 예술 특화 학교 등의 고교 이후 과정 재학 중.
4. 할당 수업량이 단축된 학생일 경우 8 CFR §214.2(f)(6)(iii)에 맞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축 커리큘럼 이수 중이며 DSO에게 인가를 받았을 것.

04.6.2018

(이어지는 내용)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CPT, OPT에 참가 중인 학생들 또한 법적 위치에 관한 하자 없이 노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로펌에게 보내 준 “대학원 노조화가 어떻게 F1 비자 국제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서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CPT, OPT 참가생이 노조에 참여하더라도 노동법 214.2(f)(14) 항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법 조항이 명시하는 부분은 노사 분류 도중에 파업 분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할 수 없다는, 고용인을 제약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조항은 학생의 노동권을 일체 제약하고 있지 않으며, 제약되는 항목은 노사 분류 중 고용인의 신규 고용 권리로서, 해당 분류가 끝남과 동시에 해당 고용인의 신규 직원 채용 또한 재개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민법을 사용하여 고용인이 노조나 노조의 집단 행동권을 제약하는 건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문이 해결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본 로펌에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역자 주: 이 편지는 대학원 노조화는 유학생들의 비자 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생 직원 연합(Coalition of Graduate Employees)에서 펜실베니아 주재 노동법, 이민법 전문 로펌인 Shagin Law Group LLC에게 문의하여 답장 받은 내용을 한역 한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한국인 학우는 본 단체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많은 학우들의 성원과 지지를 염원합니다.